

정조의 『臨軒題叢』 편찬과 御題 출제 *

박 현 순 **

-
- | | |
|-------------------|---------------------------------|
| 1. 머리말 | 3. 『임현제총』을 통해 본 정조의 어제
출제 경향 |
| 2. 『임현제총』의 편찬과 활용 | 4. 맺음말 |
-

초록: 정조는 재위 기간 중에 과거와 관련된 여러 종류의 책을 편찬하였다. 그 중 『임현제총』은 문과, 초계문신 제술 시험, 성균관 시험 등 각종 시험에서 자신이 출제한 御題를 모아 정리한 책이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정조의 어제 출제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정조는 좋은 科文을 짓게 하려면 좋은 試題를 출제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임현제총』에 수록된 어제는 그 고민의 산물로 君師의 역할을 강조한 정조가 관료와 유생들에게 요구한 공부의 내용과 글쓰기의 형식을 내포하고 있다.

이 글은 『임현제총』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이다. 『임현제총』을 편찬한 목적과 그 활용에 대해 살펴보고, 『임현제총』에서 확인되는 정조의 출제 경향을 검토하였다. 이 글을 통해 정조가 관료와 유생들에게 科文體를 벗어난 실용적인 글쓰기를 요구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핵심어 : 臨軒題叢, 御題, 抄啓文臣, 成均館, 科舉

* 이 논문은 2008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08-361-A00007).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부교수.

1. 머리말

정조는 재위 기간 중에 많은 책을 편찬하였다. 그 중에는 『臨軒題叢』, 『臨軒功令』, 『正始文程』, 각종 賓興錄 등 과거의 시행과 관련된 책도 여러 종이 포함되어 있다. 이 중 특히 주목되는 책이 『임현제총』과 『임현공령』이다. 『정시문정』과 빈 흥록이 특정 시험에 관련된 기록인 데 비하여 두 책은 정조대 과거의 시험 내용 전체를 보여주는 기록이기 때문이다.

『임현제총』은 문과, 초계문신 제술 시험, 성균관 시험 등 각종 시험에서 출제한 御題를 모아 정리한 책이다. 『임현공령』은 경외의 각종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선발된 답안을 모아 편찬한 책이다. 두 책은 정조대 편찬을 시작한 이래 19세기까지 지속적으로 편찬되어 정조대 이후 각종 시험에서 어떤 문제를 출제하고, 또 어떤 답안이 선발되었는지를 보여 준다.

조선시대 과거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검토되어야 하는 문제 중 하나가 과거에서 무엇을 묻고 어떻게 답했는가 하는 것이다. 시험 문제와 답안은 과거가 요구하는 지적인 배경과 글쓰기 방식, 평가의 기준, 궁극적으로는 과거를 통해 국가가 양성하고 선발한 인재상을 보여주는 자료가 된다.

지금까지 과거의 문제 및 답안과 관련해서는 科文의 형식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¹⁾ 과문은 주어진 주제와 科文體라는 특정한 형식에 맞춘 공적인 글쓰기라는 점에서 순정문학과는 구분된다. 따라서 형식에 대한 연구는 과문 이해의 첫걸음이 된다.

과문 관련 연구는 최근 새로운 활력을 얻고 있다. 대동한문학회에서는 최근 3년에 걸쳐 과거와 관련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는데, 그 가운데 과문에 대한 집중적인 검토가 진행되었다.²⁾ 나아가 과문을 연구한 박사학위 논문도 제출되었다.³⁾ 또

1) 과문 연구의 동향에 대해서는 황위주, 2013 「科學試驗 研究의 現況과 課題」, 『대동한문학』 38, 18-20면 및 이상숙, 2015 「조선 과문(科文)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4-9면 참조.

2) 강석중, 2013 「科賦의 형식과 문체적 특징」, 『대동한문학』 39 : 김윤조, 2013 「한문 산문 '論'의 형식과 문체적 특징」 같은 책 ; 李來宗, 2013, 「疑義의 形式과 그 特性」 같은 책 :

과문의 공부법과 교재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⁴⁾ 이를 통하여 과문 관련 연구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듯하다.

이에 함께 試題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도 시작되었다. 시제는 자료 상에서 書題, 科題 등으로도 일컬어지는데, 국왕이 출제하는 경우는 御題라고 불렸다. 지어야 할 글의 제목이면서 주제이기도 하다. 시제와 관련해서는 李炳赫이 간단히 살펴본 적이 있으나⁵⁾ 본격적인 연구는 최근에야 시도되었다. 먼저 황위주는 『離騷遺香』이라는 18세기 科賦抄集을 통하여 주제의 측면에서 賦題의 출제 경향을 검토하였다.⁶⁾ 또 이상욱은 科詩, 科賦, 科表, 科策의 출제 방식과 시기별 추이를 검토하였다. 이 연구는 16세기 중반부터 고전의 특정한 문구를 뽑아 시제를 출제하여 응시자들이 전거를 파악하고, 이에 상응하는 典故를 활용하여 글을 짓도록 요구하였다는 점을 밝혔다.⁷⁾ 시제는 단순한 글의 제목이 아니라 문구의 출처와 주제를 묻는 질문을 내포하고 있으며, 그에 상응하는 전고의 활용을 통해 지식의 폭과 깊이를 평가하였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시제는 국가가 요구하는 지식의 수준과 내용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된다.

『임현제총』이 주목되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임현제총』은 국왕이 출제한 御題를 모은 책으로 국왕이 어떤 공부를 요구했는가를 보여준다. 정조의 출제 경향은 유생과 초계문신을 비롯한 관료들의 독서와 글쓰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다.

주지하다시피 정조는 문체가 세도를 반영한다는 입장에서 文風의 쇄신을 도모

장유승, 2013 「科詩의 형식과 문체적 특징」, 같은 책 ; 정경주, 2013 「科文 表箋의 형식과 문체의 특성」, 같은 책 ; 황만기, 2013 「科試 節銘頌의 형식과 문체적 특성」, 같은 책.

- 3) 박재경, 2014 「조선시대 책문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및 이상욱, 앞의 논문.
- 4) 이병주, 2014 「金錫胄의 科文學習 研究」 『대동한문학』 40 ; 혀경진·최영화, 2014, 「科試 참고서를 통해 본 조선시대 受驗 문화의 한 국면」 ; 科文 規式 참고서를 중심으로」 『열상 고전연구』 40 ; 황위주, 2014 「離騷遺香」을 통해 본 조선후기 '科賦'의 출제와 답안 양상」 『대동한문학』 40 ; 박현순, 2015 「조선시대 과거 수험서」, 『한국문화』 69 ; 심경호, 2015, 「조선의 科舉와 參考書, 그리고 韻書」, 『열상고전연구』 46.
- 5) 李炳赫, 1986 「韓國科文研究-詩·賦를 중심으로」, 『東洋學』 16, 12-28면.
- 6) 황위주, 앞의 글(2014), 17-29면.
- 7) 이상욱, 앞의 글, 195-207면.

하였다. 이른바 ‘문체반정’은 그 가운데 일어난 하나의 사건이다. 이 사건이 미친 파장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요하지만 우선 ‘문체반정’이 공적인 글쓰기, 즉, 科文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⁸⁾ 정조는 과문의 쇄신을 통하여 문풍을 쇄신하고자 한 것이다. 정조의 시제는 문풍의 쇄신이라는 자신의 과업을 수행하는 방편이기도 하였다.

정조는 좋은 과문을 짓게 하려면 좋은 시제를 출제한다고 인식하였다. 또 자신이 출제를 위해 얼마나 고심하였는지를 피력한 바 있다.⁹⁾ 『임현제총』에 수록된 어제는 그 고심의 산물로 君師의 역할을 강조한 정조가 요구한 공부의 내용과 글쓰기의 형식을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글에서 정조의 어제에 담긴 이념적 문학적 지향을 다루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시제 하나하나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은 과거의 시험 내용이었으며, 당대의 儒者들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었다. 이 글은 『임현제총』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로 『임현제총』을 편찬한 목적과 이에 반영된 출제 경향을 검토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를 토대로 정조가 생각한 이상적인 시제와 글쓰기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2. 『임현제총』의 편찬과 활용

1) 『임현제총』의 편찬과 현존 현황

『임현제총』은 정조가 각종 시험에서 출제한 御題를 모아 필사한 책이다. 『羣書標記』에는 당시에 정조가 즉위한 1776년부터 1799년(정조 23)까지의 출제분을 이 미 수록하였고, 추후에도 매년 증보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임현제총』은 정조

8) 김성진, 1993 「정조년간 과문의 문체 변화와 문체반정」, 『한국한문학연구』 16 : 강혜선,
2010 「정조의 문체 비판 재론」, 『한국문화』 49.

9) 정조, 『弘齋全書』 권182, 「羣書標記」 4, 臨軒題叢.

의 사후인 19세기에도 계속 편찬되었다. 정조의 『임현제총』 편찬은 역대의 御題集 편찬이라는 새로운 전통을 창출하였다.

『임현제총』이 정확히 언제부터 편찬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임현제총』이라는 명칭은 1787년(정조 11)에 처음은 보이지만¹⁰⁾ 이보다 앞선 1784년 5월에 내각에 소장된 어제를 모두 등서하여 성균관에 비치하도록 한 일이 있고,¹¹⁾ 1785년 1월에는 『臨軒功令』과 함께 ‘御題冊子’를 언급한 사례가 있다.¹²⁾ 이때의 어제책자가 『임현제총』일 것이다. 다만 같은 날의 『일성록』 기사에는 한자가 ‘御製冊子’로 되어 있어서 불분명한 점이 있다.

한편 1781년(정조 5) 2월에는 성균관에 명하여 예조의 문서를 토대로 전후의 科題를 모두 수집하여 보고하게 한 일이 있다.¹³⁾ 이 때 편찬된 것으로 보이는 책이 1777년(정조 1) 8월부터 1782년(정조 6) 초반까지의 각종 시제를 수록한 『京外題錄』이다.¹⁴⁾ 이즈음에 『임현제총』의 편찬도 시작되었을 가능성성이 있다.

『임현제총』과 짹을 이루는 책이 『임현공령』이다. 『임현공령』은 각종 과거와 초계문신제술 등에서 우등한 답안을 기록한 책이다. 현재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정조대~고종대 작성본 73책, 국립중앙도서관에 순조대 편찬본 4책이 전한다.

『임현공령』의 편찬에 대한 기록은 1781년(정조 5) 5월 『내각일력』에 처음 등장하는데,¹⁵⁾ 이듬해인 1782년 2월에 ‘畢役’하여 차례대로 謄出한다는 기록이 보인다.¹⁶⁾ 앞서 수록범위와 編次에 대한 논의가 나타나는 것으로 미루어 이 즈음에 편

10) 『승정원일기』 정조 11년 10월 25일(기미) “上曰 臨軒題叢持來 賤臣承命出持入 上曰 抄啓 文臣課試題 出給閣吏 卽爲頒布事 分付”

11) 『승정원일기』 정조 8년 5월 6일(경신) “上曰 近來應製 謄置本館乎 鍾顯曰 未及謄置矣 上顧謂行任曰 內閣御題 盡爲謄送乎 行任曰 從當謄送計矣 上曰 此後書題 如有疊出之事 試官稟定 倘無更出之弊 可也”

12) 『승정원일기』 정조 9년 1월 13일(기해) “上曰 … 備邊司丙申謄錄冊及內閣所置御題冊子臨軒功令 注書出去持入 可也”

13) 『일성록』 1781년 2월 12일 “予曰 凡諸科場之御題 每有疊出之患 故向日以前後科題盡爲收緝以稟之意分付矣 其間已盡收集耶 有防曰姑未收集矣 予曰令成均館謄出於禮曹 斯速收集事分付”

14) 『京外題錄』(규9943).

15) 『내각일력』 1781년 5월 15일.

16) 『승정원일기』 정조 6년 2월 13일(경진).

찬 체제를 갖추어 이전까지의 科作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¹⁷⁾ 이어 1782년 12월에는 大本과 小本을 각각 작성하되 대본은 예조에서 작성하여 규장각에 비치하고, 소본은 규장각에서 등서하여 内藏하게 하라는 왕명이 있었다.¹⁸⁾ 이러한 일련의 과정으로 미루어 보면 『임현공령』이 체제를 갖추어 편찬된 것은 1782년 즈음으로 파악된다.

그런데, 『임현공령』의 總目과 凡例가 수록된 『常目總覽』에는 병진년(1776)부터 계묘년(1783)까지의 31책과 갑진년(1784) 이후에 작성된 부분이 구분되어 있다.¹⁹⁾ 이로 미루어 보면 1782년에 초고를 작성한 후 이듬해인 1783년에 수정을 거쳐 1776년~1783년의 科作을 모은 1차분을 완성한 것으로 보인다.

『경외제록』과 『임현공령』의 편찬에 대한 언급이 등장하는 1781년 2월과 5월은 초계문신제가 도입된 시점이기도 하다. 이 해 2월 초계문신제를 마련하고 「文臣講製節目」을 마련하여 4월부터 시험을 실시한 것이다. 초계문신제의 핵심적인 내용은 매월 課講과 課試, 親試를 시행하는 것이며, 친시의 어제는 정조가 직접 출제하였다. 따라서 이 시점은 국왕이 상시적으로 어제를 출제해야하는 필요성이 대두된 시점이기도 하다. 『임현제총』의 편찬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명이 『임현제총』으로 된 책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3책과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1책이 확인된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은 『臨軒功令』(奎 11437)의 제1-3책으로 편제되어 있다. 『일성록』에 수록된 試題와 비교해 보면 제1책은 순조의 재위기간인 1800년-1833년 사이에 출제한 어제, 제2책은 대리청정 중이던 효명세자가 1827년-1828년 사이에 출제한 시제를 수록한 것으로 확인된다. 필체의 연속성으로 미루어 두 책은 각각 추후의 어느 시점에 정리하여 등서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달리 제3책은 1855년(철종 6)에 출제된 시제를 모은 것으로 어제 외에 각종 시험에서 시관들

17) 『내각일력』 1781년 12월 10일 ; 『승정원일기』 정조 6년 2월 3일(경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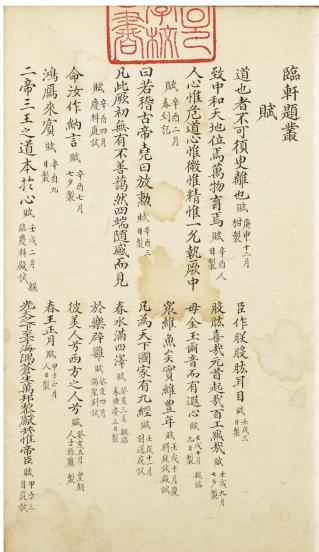
18) 『내각일력』 1782년 9월 20일 “以司卷傳于鄭志儉曰 臨軒功令大小本批抹處 自今皆依原試券詳載 而御批以紅 試批以青 大本則仍置本閣 每經科試 出給禮曹 修整以來後 内藏小本 自本閣請出 謄書以入 可也”

19) 『常目總覽』(규7914) 「臨軒功令大本總目」 및 「臨軒功令大本傳掌錄」(丁巳, 17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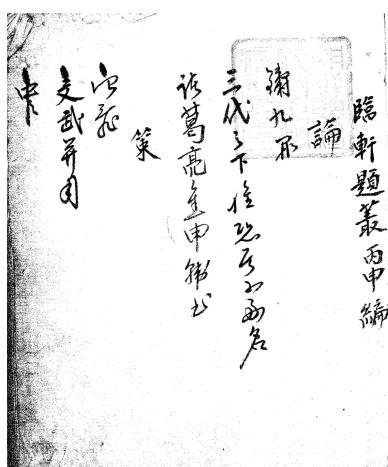
이 출제한 시제도 함께 수록하였다. 따라서 제3책은 원래의 『임현제총』과는 성격이 다르다.

『군서표기』에 따르면 정조대 『임현제총』은 文體別로 분류하고 매연을 상하로 나누어 細字로 기록하였다고 한다.²⁰⁾ 규장각한국학소장본 제1책과 제2책의 작성 방식도 이와 동일하다.

두 책은 문체별 분류 내에서는 출제 시기순으로 시제를 수록하였는데, 시제마다 시제, 문체명, 출제 시기, 출제 시험 종류를 기록하였다. ‘道也者不可須臾離也 賦庚申十二月 相製’와 같은 방식이다. 정조대 『임현공령』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시험 정보를 수록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정보도 정조대의 방식을 그대로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림 1〉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임현제총」



〈그림 2〉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임현제총』

20) 정조, 『弘齋全書』 권182, 「羣書標記」 4, 臨軒題叢 “自丙申至己未 彙錄各體 以蠅頭細字 分上下格書之”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임현제총』은 정조가 즉위한 1776년부터 1798년(정조 22)까지의 어제를 수록한 책이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소장본과 달리 草書로 시제만 기록한 후사본이다. 서둘러 필사한 듯 誤字와 오류도 상당히 많이 발견되며, 편차의 오류도 있다. 또 문체별로 분류하고 각 시제를 시기순으로 기재하였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연도별로 작성하였다는 점에서는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과 차이가 있다.

이 책을 누가 언제 필사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1795년에 경시관이 향시를 주관하기 위해 내려갈 때 『임현제총』을 등서해 가도록 정식하였고, 1797년에는 매년 연말 성균관, 사학, 팔도, 四都에서 『임현제총』을 등서해 가도록 정식한 일이 주목된다.²¹⁾ 이 과정을 통해 『임현제총』이 민간에도 유포될 수 있었을 것이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은 정식에 따라 1798년까지의 어제를 등서한 책이거나 등서본을 민간에서 다시 등서한 책일 것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제1책 · 제2책은 문체별 분류를 우선한 데 비하여 국립중앙도서관본은 연도별 편찬을 우선하였다. 『군서표기』에 기록된 내용은 『임현제총』이 문체별 분류를 따랐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연도별로 작성하였는지의 여부는 불분명하다.

편찬과정의 공력을 생각하면 연도별 작성이 보다 수월할 듯하다. 그러나 『임현공령』은 시험 직후에 바로 기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수시로 증보하였지만 처음부터 연도의 구분없이 문체로만 분류하였다.²²⁾ 따라서 『임현제총』의 원본도 문체별 분류를 따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의 일부에는 연도가 바뀔 때에 ‘臨軒題叢 丙申編’과 같이 연도별 편찬이 명시되어 있어서 필사의 저본도 연도별로 편찬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달리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이 온전히 문체별 분류를 따른 것은 후대에 정리하여 완성한 正本이었던 때문으로 보인다. 당초에는 연도별로 편찬하였으나 뒤에 문체별로 재편집하여 正本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21) 『승정원일기』 정조 19년 11월 17일(갑자) : 『승정원일기』 정조 21년 9월 24일(경인).

22) 『상복총람』 「臨軒功令大本摠目」 : 『임현공령』 4책-21책(정조대 작성분).

2) 『임현제총』의 편찬 목적과 활용

조선초기부터 국왕들이 御題를 내 文臣이나 성균관 유생들에게 응제하게 하는 일들은 종종 있었다. 그러나 어제를 별도의 책자로 정리하였는지는 불분명하다. 다만 정조의 말에 따르면 숙종대에는 성균관에서 어제를 모두 기록해 두었다고 한다. 그러나 당시에는 이 관행이 없어졌다고 지적한 것을 통해 영조대 이후에는 어제를 따로 기록해 두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²³⁾

이와 별도로 과거를 관장하는 예조에는 전국에서 시행된 과거 관련 자료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그 중에는 방목도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 우수 科作도 포함되어 있다. 다만 방목은 시관이 시험의 결과를 보고하는 문서로 시험별로 작성되어 있었으며, 시제를 모아 따로 편찬하지는 않았던 듯하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정조가 처음 시제의 모음집을 편찬하게 한 것은 1781년(정조 5)이다. 이 해 2월에 성균관에 명하여 예조의 문서를 토대로 전후의 科題를 모두 수집하여 보고하게 한 것이다. 御題를 낼 때 이미 출제된 시제를 중복하여 출제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²⁴⁾ 즉, 어제를 낼 때 참고하기 위한 자료집으로 시제 모음집을 편찬하게 한 것이다.

이 때 편찬된 것으로 보이는 『京外題錄』은 문과편인 「京外大科題」와 생원진사시 편인 「京外小科題」로 나누어 문체별로 시제를 정리 수록하였다. 출제시기는 1777년 8월부터 1782년 초반까지다.²⁵⁾ 책의 첫 면에 정조의 장서인인 ‘極’印과 ‘弘齋’印이 찍혀 있어서 정조의 소장본임을 알 수 있다. 이 책은 정조대 규장각 西庫의 장서 목록인 『西序書目』에도 실려 있다. 또 곳곳에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표시한 부호들이 남아 있어서 정조가 이 책을 활용하였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이후 성균관에

23) 『승정원일기』 정조 14년 3월 8일(무자) “又命書傳教曰 太學卽試土之所 科題之謄置 自是本館故事 予於幼時 見肅廟朝 命泮儒無時應製 考下諸券 以優等四五人 竝賜及第 其後節製或賜第 或賜初試書題 僕有載錄之謄錄 年前聞之 本館近無題錄冊云”

24) 『일성록』 1781년 2월 12일 “予曰 凡諸科場之御題 每有疊出之患 故向日以前後科題盡爲收緝以稟之意分付矣 其間已盡收集耶 有防曰姑未收集矣 予曰令成均館謄出於禮曹 斯速收集事分付”

25) 『京外題錄』(규9943).

서는 절제와 승보시 등 성균관에서 시행하는 모든 시험의 시제는 물론 초계문신 시험의 시제도 기록해 두는 것이 정식이 되었다. 이 역시 시제의 중복 출제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²⁶⁾

시제를 출제할 때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이미 다른 시험에서 출제된 문제를 다시 출제하는 것이다. 기출문제가 다시 출제되면 앞서 그 시험을 치른 사람에게 유리하다고 인식하였기 때문에 시험의 공정성이 문제가 되었다. 유생들이 改題, 곧 시제의 변경을 요구하면 시관이 새로운 시제를 내는 일도 있었다. 하지만 시제의 출제는 시관의 고유 권한이었던 만큼 개제 여부를 둘러싸고 시관과 유생이 충돌하는 일도 종종 발생하였고, 이해관계가 다른 유생들이 서로 충돌하는 일도 있었다.²⁷⁾ 이 때문에 이미 인조대에 改題를 불허한다는 정식을 마련한 바 있다.²⁸⁾ 하지만 여전히 개제를 둘러싼 충돌은 龕場을 야기하는 불안 요소로 남아 있었다. 따라서 시험의 권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출문제의 중복출제를 피해야만 했다.

국왕이 출제하는 어제는 더욱 신중해야만 했다. 어제를 자주 출제한 영조나 정조는 늘 중복 출제를 우려하여 어제를 출제한 후에 기준에 출제된 적이 있는지, 또 조선의 문집에 같은 제목의 글이 있는지를 확인하곤 하였다.

1736년(영조 12) 중복 출제가 불안했던 영조는 시험 전날 막 문과에 급제한 한림과 주서들에게 최근 7년간의 科題를 모두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그래도 불안하자 대제학에게 자신이 낸 어제를 보여주며 확인을 받았다. 시제는 누구에게도 미리 보여줄 수 없는 것이었지만 그만큼 불안했던 것이다.²⁹⁾

26) 『내각일력』 1783년 5월 10일 “有防曰 … 至於成均館則勿論節製及陞補 例有書題謄置之冊子者 恐有科題疊出之慮故也 臣意此後本閣抄啓策問題作謄去時 並御題謄布 仍令成均館敬謄一本謄書於科題冊子之中 以爲頒示齋儒 以憑日後之考 恐合事宜矣 上曰所奏極好自本閣以此知委可也”

27) 『광해군일기』 광해군 9년 7월 19일(신사) “文科二所試官任性之等啓曰 臣等今日中場 賦表題出 掛懸題板 則士子等來請改題 或稱私接所作 或稱東人所有 或稱鄉試會出之題 出輒請改臣等一從儒生之言 請輒即改”

28) 『승정원일기』 인조 1년 8월 13일(신미) “答曰 浮薄士子等 作亂罷場 試官何以善處乎 頃日筵中 舉子雖有改題之請 勿改事 鄭百昌親承下教矣 今此罷場 意必由此 而有是變也 試官別無所失 勿爲更煩”

중복 출제가 되더라도 시험이나 출제자가 권위가 있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1723년 병조판서 李肇는 몇 달전 문과초시에서 출제된 문제를 황감제에서 다시 출제하였지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³⁰⁾ 어제라면 더욱 그러하였다. 그러나 중복출제는 어제의 권위를 떨어트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더욱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정조는 『경외제록』을 통해 어제를 낼 때 중복출제할 위험을 피하는 한편 『임헌제총』이 편찬된 후에는 성균관에 이를 등서하여 비치해 두고 중복 출제 여부를 미리 점검하도록 하였다.³¹⁾ 어제의 중복 출제를 막기 위하여 이중 장치를 설치한 셈이다.

당시 정조는 御題와 試官之題를 나누어 두 책을 작성하도록 정식을 마련했다고 한다.³²⁾ 정조가 『임헌제총』과 『경외제록』을 소장하고 중복 출제를 피한 것처럼 성균관에도 어제와 시관의 시제를 보관하며 중복 출제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것이다.

정조는 스스로 시제를 낼 때 文句나 題意가 이전의 것을 답습하지 않았다고 자부하였다.³³⁾ 실제 정조대 『임헌제총』에 수록된 1,347편의 어제 중에 동일한 어제가

-
- 29) 『승정원일기』 영조 12년 4월 25일(기축) “上書下御題曰 此或已出於科場者耶 提學獨爲拆見 可也 上曰 近日科場中 無此題耶 似或已出 故昨夜泛問於翰注矣 上因命翰注更達己酉以後科賦題 如昨夜對時然後 上曰 然則此題不會出於科製矣 因命志泰 持入望筒納書題.
- 30) 『승정원일기』 경종 3년 12월 17일(임술) “兵曹判書李肇疏曰 曰者頒柑試製時 卒承書題書入之命 邁檢詩經 率爾拈出書進 及詣泮宮之後 始聞其東堂科試所出者 而凡科場 不得改題曾有定式 至於點下之書題 陳啓請改 事體至爲重大 不得不仍爲出揭 科題前後疊出 自前或所不免 而數月間再出 臣始犯之 矇然之責 無以自解 臺評問備 誠爲太輕歎 臣誠懸慮兢隕 無以容措 出題一事 昏謬至於如此 考試之不能稱其任 據此可知 … 答曰 省疏具悉 偶然疊出 元非大段 卿其安心 勿辭行公”
- 31) 『일성록』 1784년 5월 6일 “召見大司成閔鍾顯及校正閣臣文臣于誠正閣 予曰 近來應製 謄置本館乎 鍾顯曰未及謄置矣 予謂尹行任曰 內閣御題盡爲謄送乎 行任曰從當謄送計矣 予曰此後書題如有疊出之事 試官稟定 倘無更出之弊”
- 32) 『일성록』 1790년 3월 8일 “教曰 太學卽試土之所 科題之謄置 自是本館故事 … 年前聞之 本館近無題錄冊云 特令復舊錄置 而久遠科題 如難聚謄 則自丙申爲始 御題與試官之題 分謄兩冊之意 有所定式 則今日取見 乙巳(1785)以後無端闕却 此似小事 名以特教定式 而舉行極爲慢忽 當該大司成 自政院查出施以罷職之典”
- 33) 정조, 『弘齋全書』 권182, 「羣書標記」 4, 『臨軒題叢』.

동일 문체에 중복 출제된 사례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정조는 기출문제를 중복 출제하지 않는다는 금기를 지키는 데 성공한 셈이다.

『임현제총』이 19세기에도 계속 작성된 것처럼 전국 科場의 시제를 모은 책자도 지속적으로 편찬되었다. 현재 순조대의 시제를 모은 『科題各體』(奎6989, 1828-1833)와 현종대의 시제를 모은 『科題各體』(奎7299, 1835-1848)가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다. 어제와 시관의 시제를 함께 수록한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임현제총』 제3책은 그 연장선에서 작성되었을 것이다. 19세기에도 어제와 시관의 시제를 책자로 작성하여 어제의 출제에 활용하도록 한 것이다.

정조대 편찬된 『임현제총』과 『경외제록』 등과 같은 기출시제 모음집의 편찬은 기출 문제의 중복 출제를 피하는 데 주목적이 있었다. 영조가 한림·주서나 대제학과 같은 관료의 도움을 받았다면 정조는 이를 책자로 편찬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한 것이다.

당초 국왕을 위해 편찬된 『임현제총』은 원본을 보관한 규장각과 사본을 보관한 성균관에서만 활용이 가능하였다. 하지만 1795년(정조 19)에 이르러 상황이 달라졌다. 이 해에 어제로 출제된 賦題와 律詩題가 각각 승보시의 詩題와 초계문신 課試의 律賦題 시제로 출제된 일이 있었다. 이 일을 계기로 지방의 公都會를 제외한大小科場에서 어제를 동일한 문체의 시제로 출제하는 것을 금하였다. 또 향시를 시행할 때 파견하는 京試官은 미리 御題錄을 확인하고 내려가게 하였다.³⁴⁾ 기출 어제가 향시에서 출제되는 일이 없도록 한 것이다. 이로써 『임현제총』이 전국의 대소과장에서 어제의 중복 출제를 방지하는 참고자료로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2년 후인 1797년(정조 21) 식년시 때는 경시관들이 당년의 어제만 등서해 간 것이 논란이 되었다. 이를 계기로 성균관 외에도 四學과 八道, 四都에 『임현제총』 1건씩을 등서하여 보내고, 매년 연말 지방관이 당해년의 어제를 추가하는 것을 정

34) 『승정원일기』 정조 19년 11월 17일(갑자) “上命書傳教曰 大小科試之題 謄上於冊子 藏于泮宮 曾有定式者 蓋欲曉然知既用於御題 無敢矇然混出也 … 而大小科場 則但以御題之已出於詩題者 勿爲更出於試官之詩題 各體倣此 以此下教 頒示朝紙 使諸生俾各知悉 … 外方公都會 何必爲拘乎 只令京試官詳考題錄下去事 亦爲定式”

식으로 삼았다. 아울러 규장각에 『임현제총』 4건을 비치하여 매식년 경시관이 가지고 갔다가 시험 후 반납하도록 하였다.³⁵⁾ 즉, 전국에 『임현제총』을 비치하는 것이 정식이 된 것이다. 이 내용은 1803년 식년시의 과거사목에도 수록되어 있어서 추후에도 계속 준수되었음을 알 수 있다.³⁶⁾

전국의 과장에서 『임현제총』을 참고하게 된 것은 그만큼 과거의 시체를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賦題로 출제된 어제를 詩題로 출제하는 것처럼 어제를 다른 문체에 출제하는 것은 허용하였다. 따라서 『임현제총』은 출제를 위한 참고자료집으로도 활용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임현제총』을 통해 본 정조의 어제 출제 경향

1) 어제를 출제한 시험의 종류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정조대 『임현제총』에는 정조즉위 직후인 1776년 8월부터 1798년 12월까지의 어제 1,347편이 수록되어 있다. 23년간 연평균 58.6편의 어제를 출제한 셈이다. 가장 적은 해는 1780년으로 10편이며, 가장 많은 해는 1789년으로 107편에 이른다.

조선초기부터 국왕들이 어제를 출제한 사례들은 종종 확인된다. 그러나 확실히 영조대부터는 이전에 비하여 어제의 출제가 늘어났다. 영조대에는 성균관 교육을 강화한다는 의도 하에 성균관의 節日製 시행을 늘리는 한편 본래 大提學 등이 출제하는 科題를 어제로 대체하였다. 이에 따라 성균관 시험의 횟수도 늘어나고 어

35) 『승정원일기』 정조 21년 9월 24일(경인) “晚秀曰 … 此後則依成均館所藏御題題錄之例 自本閣 謄出臨軒題叢一通 分送各一件於四學·八道·西都，使之奉藏 而每歲末 各其道守臣 報本閣謄去當年所下御題 次次添付 臨科考覽 俾無如前欠敬之弊 又成置題錄四件於本閣 每式年 四道京試官下去時 依御史齋去事目例 分授齋往 復命時還納本閣事 定式施行 以爲尊事體之道 何如 上曰 依爲之”

36) 『監市謄錄』 1면, 来闢(한국국학진흥원 소장).

제의 출제 빈도도 높아졌다.³⁷⁾ 게다가 정조대에는 초계문신제도를 도입하여 어제의 출제가 더욱 늘어났다.

『임현제총』에 수록된 어제가 어떤 시험에서 출제되었는지를 『일성록』, 『내각일력』 등의 연대기를 통해 확인해 보았다.³⁸⁾ 이 결과에 따르면 정조가 어제를 출제한 시험은 문과 전시와 重試, 성균관 節日製와 黃柑製, 초계문신 親試와 課試, 文臣製述,³⁹⁾ 翰林召試,⁴⁰⁾ 각종 應製, 수원부 儒生課試, 吏文製述, 檢書官 取才, 賓興科 등으로 거의 모든 시험에서 걸쳐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초계문신 시험과 성균관 시험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다. 전체 1,347편 가운데 시험 종류를 확인한 사례는 1,138편인데, 이중 초계문신제술이 포함된 시험이 545편, 성균관시험이 포함된 시험이 363편이다. 그 다음은 수원부 유생 과시 69편, 문과 전시 36편 등의 순이다. 이들은 모두 정례적으로 시행된 시험이다.⁴¹⁾

37) 영조대 성균관 시험의 증설에 대해서는 다음 글 참조. 원창애, 2012 「조선시대 文科 直赴制 운영 실태와 그 의미」 『조선시대사학보』 63, 100-108면 ; 박현순, 2014 『조선후기의 과거』, 소명출판, 139-145면; 최광만, 2015 「영조대의 성균관 과시 정책」 『한국교육사학』 37-3.

38) 『임현제총』과 『일성록』, 『내각일력』, 『승정원일기』 등의 어제 출제 기록을 비교해 보면 『임현제총』에 누락된 어제도 있다. 예를 들어 1778년(정조 2) 구일제 어제인 ‘擬宋歐陽修請退小人之僞朋進君子之眞朋’은 『임현제총』에는 누락되어 있다. 하지만 『임현제총』에 수록된 策題를 『홍재전서』와 비교해 보면 누락없이 모두 수록되어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모든 어제를 『임현제총』에 수록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임현제총』에 수록된 어제 1,347편 중 209편은 연대기에서 확인할 수 없었다.

39) 문신제술은 1741년(영조 17)에 새로 도입한 제도로 2월과 8월에 당하 문신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제술시험이다. 정조대에도 대개 2월과 8월에 시행하였는데, 두 종류의 시제를 내어 선택하여 제술하게 하였다. 『임현제총』을 분석한 결과 정조 전반에는 表箋題 1제와 論題 1제를 출제하였고, 1790년 이후에는 표전제 1제와 부·잡·명·송 중 1제를 출제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전대신 策과 詔를 출제한 사례도 있다. 『영조실록』 권53, 영조 17년 4월 23일(정사).

40) 한림소사는 1741년(영조 17)에 새로 도입하였다. 한림의 자천제를 폐지하고 국왕이 후보자를 직접 시험하여 선발하게 한 제도다. 『영조실록』 권53, 영조 17년 4월 25일(기미).

41) 〈표 1〉과 〈표 4〉에서 관료 중 기타는 초계문신이 아닌 관료, 공통은 초계문신과 기타관료에게 공통으로 출제한 경우다. 성균관은 절일제, 황감제, 洋儒 응제 등 성균관 시험, 기타는 문과, 수원부 유생과시, 빙홍과 등 성균관 시험이 아닌 경우이며, 공통은 공통으로

성균관 시험은 春到記·秋到記, 人日製, 三日製, 七日製, 九日製, 黃柑製 등 정례적으로 시행하는 시험이 연7차에 이른다. 그리고 연 6회 실시되는 日次殿講과 함께 시행한 上齋生應製도 1782년(정조 6) 이후 거의 정례적으로 실시되었다. 이외에 불시에 성균관 거재유생에게 어제를 내려 글을 짓게 하는 거재유생응제, 국왕의 의례 봉행에 참여한 參班儒生이나 祇迎儒生 응제 등 부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시험도 있었다.

성균관 시험은 원칙적으로 성균관에 거재 중인 유생들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시험을 말한다. 하지만 인일제 등의 절일제나 황감제는 성균관에서 30일 이상을 수학한 원점유생을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 때로는 '通方外'라고 하여 원점유생이 아닌 경우에도 응시를 허용하였다. 나아가 영조대 이후 우등자에게 직부전시나 직부회시의 자격을 주었기 때문에 성균관 시험은 사실상 문과의 성격을 지닌다.⁴²⁾

이 중 절일제는 원래 의정부와 육조, 諸館의 당상들이 성균관에 가서 시행한 시험이다. 황감제는 명종대부터 성균관에 황감을 하사할 때 대제학과 승지를 보내 시행하였다. 춘도기와 추도기는 성균관에서 거재하는 유생들을 대상으로 불시에 시행하던 시험을 봄·가을 각 1차로 정례화한 것이다. 이 시험들은 문과와 생원·진사시와 마찬가지로 당초에는 시관이 출제하였으나 영조대 이후 어제를 출제하는 사례가 늘어나 정조대에는 어제 출제가 관행화되었다. 그 결과 19세기에 편찬된 『銀臺條例』와 『銀臺便攷』에는 『續大典』과 달리 모두 어제로 시험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초계문신제는 1781년(정조 5)부터 시행되었다. 37세 이하의 문신들을 선별하여 강경과 제술로 전공을 나누고 강경은 매달 課講 1차, 제술은 매달 課試 1차와 親試 1차를 부과하였다. 그리고, 講製를 겸행한다는 취지 하에 친시에는 應講人도 응시하고, 4명씩의 과강에는 應製人도 응시하게 하였다. 초계문신제의 운영 규정은 『문신강제절목』으로 정식화되었다.⁴³⁾

출제한 경우다. 전체 공통은 관료와 유생에게 공통으로 출제한 경우다.

42) 정조대의 성균관 시험에 대해서는 박현순, 앞의 책, 209-214면 및 최광만, 2015 「정조대의 성균관 과시 정책」, 『한국교육사학』 37-4 참조.

43) 정우자, 1981 「奎章閣抄啓文臣研究」, 『규장각』 4.

『문신강제질목』에 따르면 과시의 시제는 시험 전날 국왕이 여러 문체 가운데 하나를 낙점하면 규장각에서 3망을 갖춘 書題望을 올려 다시 낙점을 받도록 하였다.⁴⁴⁾ 친시의 경우 출제에 대한 정식은 없으나 처음부터 어제로 출제한 것으로 확인된다. 하지만 과시에 어제를 출제하는 사례도 빈번하였다. 특히 과시나 과강의 居首를 가리기 위한 比較 시험이나 更試에서는 어제를 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초계문신제를 도입한 1781년의 어제 출제 상황을 보면 친시 8회에 12편, 친시비교 3회 3편, 과시 2회 2편, 과시 비교 1회 1편, 과강 비교 3회 4편을 출제하였다.⁴⁵⁾ 실제 어제를 출제하는 범위는 『문신강제질목』에 규정된 것보다 훨씬 넓었다.

수원부 유생 課試는 수원부 유생 應製, 수원부 읍내 유생 試取 등 다양한 명칭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현릉원 조성을 계기로 1790년(정조 14)부터 시행한 시험이다. 정조는 1789년 7월 사도세자의 묘를 수원 현릉원으로 이장하기로 결정하고, 수원 읍치를 팔달산 밑으로 이전하였다. 그리고, 이듬해 3월 수원읍내에 새로 이주한 유생들과 무사들을 위한 시취 정식을 발표하였다.⁴⁶⁾ 『일성록』과 『내각일력』에 따르면 시험은 매달 月課로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첫해인 1790년에는 7회에 걸쳐 각각 詩·賦와 表箋 1편씩 총 14편의 어제를 출제하였는데, 어제 출제는 1795년까지만 나타난다. 이후 수원을 유수부로 승격시키고 개성과 강화의 예에 따라 公都會를 설치하면서 이 시험은 폐지된 것으로 보인다.⁴⁷⁾ 수원부 유생 과시는 한시적으로만 시행되었다.

44) 『정조실록』 정조 5년 2월 18일(신유).

45) 횟수에 비해 편수가 많은 것은 한 시험에 여러 개의 시제를 내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2월 8일의 친시에는 5언4운 율시 ‘拱北樓’, 7언4운 율시 ‘指南車’로 두 개의 어제를 냈다. 『내각일력』 1781년 12월 8일 “御題 五言四韻律詩 拱北樓 押樓 七言四韻律詩 指南車 押車 限未時”

46) 『정조실록』 정조 14년 3월 10일(경인).

47) 수원의 공도회 설치문제는 유수부 승격과 함께 대두되었는데, 1794년에 정식을 논의하였으며, 1795년 9월에 시행 기록이 확인된다. 수원유생과시의 어제는 1795년 6월분까지 확인된다. 『정조실록』 정조 17년 6월 20일(신사) : 『승정원일기』 정조 18년 9월 15일(기해) ; 『승정원일기』 정조 19년 9월 16일(갑자).

〈표 1〉『임현제총』 수록 어제의 시기별·시험대상별 편수

시험 연도	관료			유생			공통	미상	합계
	초계 문신	공통	기타	성균관	공통	기타			
1776			6	5		1		11	23
1777			3	4		4		5	16
1778			8	6		2		4	20
1779			2	5		1		7	15
1780			3	4		1		2	10
1781	22		9	9				1	41
1782	29		3	12		3		5	52
1783	51		6	14		3	2	5	81
1784	37		1	12		3	4	6	63
1785	26		4	12		4	1	8	55
1786	18			9		4	1	3	35
1787	38		2	17		1		8	66
1788	16		1	18			2		37
1789	37	1	3	14		2	1	51	109
1790	30	1	6	20		21	3	2	83
1791	26		2	20		10	2	23	83
1792	18	3	6	23		16	6	4	76
1793	10		21	19		18	3	20	91
1794	25	1	2	18	1	14	9	21	91
1795	37	1	2	29		19	4	7	99
1796	39		5	8		4	3	2	61
1797	28		2	16		36	6	12	100
1798	12		1	14	3	6	2	2	40
합계	499	7	98	308	4	173	49	209	1347

『임현제총』을 토대로 연도별 어제 편수를 보면 확실히 집권기 전반보다는 후반

기애 출제가 늘어났다(〈표 1〉 참조). 집권 초반 20편 이하에 머물던 어제 수는 1781년부터 40-50편으로 늘어났고, 1789년부터는 80-90편으로 다시 늘어났다.

1781년(정조 5) 어제 수가 비약적으로 늘어난 것은 이 해에 초계문신제를 도입 하였기 때문이다. 이 해에 초계문신들에게 출제한 어제만도 22편에 달한다. 이어 1782년에는 성균관 시험의 어제 출제 횟수가 늘어나는데, 이것은 연 6차로 시행하는 日次儒生殿講 때 上齋生 應製을 함께 시행한 것과 관련된다.

성균관이나 초계문신의 시험은 정례적으로 시행하지만 해마다 어제 출제 빈도는 차이가 있다. 우선 比較나 更試를 시행한 경우 다른 해에 비해 어제 수가 늘어났다. 가령 1783년에는 친시 10회에서 12편의 어제를 출제한 외에 課講 비교 21편, 친시 비교 10편, 과시 비교 6편 등 총 51편의 어제를 출제하였다. 1799년 11월 초 계문신 친시는 비교와 갱시가 7차에 이르기도 하였다.⁴⁸⁾

또 하나의 변수는 하나의 시험에서 여러 문제를 출제한 경우다. 정조는 율시를 출제하는 경우 오언과 칠언을 함께 출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리고 1790년대에는 부와 표를 중심으로 여러 시체를 한꺼번에 출제하여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하도록 한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1791년 12월 21일 洋儒應製에서는 부, 표, 배율, 고시를 한꺼번에 출제하였다.⁴⁹⁾ 이에 따라 시험횟수가 유사하더라도 어제의 숫자는 늘어났다.

정조의 어제 출제는 1789년(정조 13)에 다시 한번 급격히 늘어났다. 이 해의 경우 출제 대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 경향은 이후에도 계속되는데, 1790년 이후의 상황에는 우선 수원부 유생 과시를 시행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이 해부터 1795년까지 매년 7편-14편의 어제를 수원부 유생 과시를 위해 출제하였다. 하지만 이 시험이 폐지된 1796년에는 다시 어제 수가 줄어들었다.

한편 1797년 8월에는 정조가 김포 章陵을 거쳐 화성 현릉원까지 행행하였는데, 연도의 10개읍에서 科體詩 1편, 賦 1편, 論·頌·銘·贊 등에서 1편 등 총 3편씩

48) 『일성록』 1799년 12월 13일.

49) 『내각일력』 1791년 12월 21일 “洋儒應製 御題表擬虞群臣賀沛然若決江河 賦寧適不來微我
不顧 古詩門外唯有吏日來徵租更索錢 排律彤庭所分帛本自寒女出”

출제하여 응제를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어제수가 다시 크게 늘어난 양상을 보이지만 다음 해에는 다시 줄어들었다.

아울러 이 시기에는 비정례적인 응제를 빈번하게 시행한 것도 하나의 변수가 된다. 예를 들어 1792년 경상도를 필두로 전국을 돌면서 시행한 賓興科가 그 예이다. 이외에 新榜生進 肅拜 時 응제, 閣臣子弟應製, 식년회시 미입격자 중 70세 이상 응제, 譯科 출신자 응제 등과 같이 선발이나 평가와는 무관한 응제가 집권 후 반기에 자주 시행되었다. 그 결과 어제의 수도 늘어났던 것이다.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정조가 어제를 출제한 시험은 성균관, 초계문신의 정례적인 시험에서 출발하였지만 수원부 유생, 지방 유생, 특정 유생 집단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시험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집권 후반기에는 제도의 틀을 벗어나 應製라는 형식으로 다양한 층위의 유생들과 대면하였다. 정조는 어제를 통치행위의 일환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2) 문체별 출제 비중

중국 수당대에 과거제가 도입된 이래 시험과목은 문체별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시기별로 그 구성은 차이가 있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수당대의 시험과목은 詩·賦와 대책문이 중심이었고, 북송대에는 經義 과목과 論이 도입되었다. 원대에는 詩·賦를 제외하는 대신 詔·誥·表를 새로 도입하였고, 명대에는 判語를 추가하였다. 과거제가 처음 실시된 이래 대책문은 꾸준히 시험 과목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었지만 나머지 과목들은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과목의 차이는 각 시대가 요구하는 문장 구사력과 그 배경 지식의 내용이 변화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⁵⁰⁾

고려 제술과의 시험 과목은 당초 당나라의 제도를 모범으로 삼아 詩·賦·策을

50) 중국 과거 시험 과목의 변천 과정은 다음 글에 일목 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 和田正廣, 1993 「明代科舉制度の科目の特色--判語の導入をめぐって」, 『法制史研究』 43, 272-273면 ; Benjamin A. Elman, 2000 *A Cultural History of Civil Examinations in Late Imperial Chin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p.729-737.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나 송나라의 제도를 받아들이면서 經義와 論을 도입하였다.⁵¹⁾ 조선 문과의 제술시험은 이 중 詩를 제외하고 表箋을 새로 도입하였다. 『경국대전』의 초시·회시 시험과목은 四書疑·五經義, 論, 賦·頌·銘·箴·記, 表箋, 對策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시의 시험과목은 對策·表·箋·箴·頌·制·詔로 초시와 회시에 없는 制·詔가 추가되어 있다.

하지만 문체별로 출제 비중은 차이가 있었다. 식년시를 기준으로 보면 사서의, 오경의와 논은 초시에서만 시험하였기 때문에 실제로는 비중이 낮았다. 특히 오경의와 사서의는 별시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그 비중이 더욱 낮았다. 또 초시와 회시에서 여러 문체 중 일부를 선택하여 출제하게 한 경우 그 사이에도 비중의 차이가 있었다. 그 결과 『속대전』의 초장과 중장 과목은 각각 사서의와 논, 부, 표전으로 축소되었다. 비중에 따라 자연스럽게 과목이 조정된 것이다.

〈표 2〉 조선시기 식년시 文科의 시험 과목

場 試	전거	初 場	中 場	終 場
初試	경국대전	五經四書疑·義·論 중 2	賦·頌·銘·箴·記 중 1, 表·箋 중 1	對策 1
	속대전	四書疑·義 중 1, 論 1	賦 1, 表·箋 중 1	"
覆試	공통	講經	초시와 동일	초시와 동일
殿試	경국대전	對策·表·箋·箴·頌·制·詔 중 1		
	속대전	論, 賦, 銘 추가		

문체별 비중은 전시의 출제 경향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속대전』에는 전시 때 對策·表·箋·箴·頌·制·詔·論·賦·銘 중 하나를 출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전시의 출제경향을 보면 17세기 전반까지는 임란왜란 시기를 제외하고

51) 고려시대 과거 시험 과목의 변천 과정은 허홍식, 2005 『고려의 과거제도』, 일조각, 126-135면 참조.

는 대책문의 출제 빈도가 압도적으로 높았다(〈표 3〉 참조). 그러나 종종 때부터 표전의 출제 횟수가 늘어나기 시작하여 숙종대에는 표전의 출제 비중이 가장 높았다. 그리고 18세기 전반 영조대부터 19세기까지는 주로 부가 출제되었다. 영조대부터 표전에 약한 지방유생을 위하여 일관되게 부를 중심으로 출제하였기 때문이다.⁵²⁾ 이런 경향은 등위만을 정하는 식년시·증광시 전시나 선발을 수행하는 별시·정시·알성시 등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즉, 문과에서는 책, 표전, 부를 중심으로 출제가 이루어졌으며, 그 비중은 시기별로 차이가 있었다. 유생들의 과거 공부법도 이같은 출제 경향의 영향을 받았다.

〈표 3〉 조선시대 문과 전시의 문제별 출제 경향

순서	시기	策	表箋	賦	箴銘頌	기타	多題	미상	합계
1	太祖	1						1	2
2	定宗							1	1
3	太宗	7						2	9
4	世宗	14	2				2		18
5	文宗	1					1		2
6	端宗	2					1		3
7	世祖	15				1	1	1	18
8	睿宗						1		1
9	成宗	18	2			1	3	1	25
10	燕山	10		1		1		1	13
11	中宗	20	9	1	2	4	7	8	51
12	明宗	8	5		2	1		7	23
13	宣祖	20	25	1		1		11	58
14	光海	14	9		1			3	27
15	仁祖	21	11	1	8	2		6	49
16	孝宗	4	4	3	1			2	14
17	顯宗	6	7	5	3	2			23

52) 박현순, 앞의 책, 135-138면 및 285-286면.

18	肅宗	10	43	13	5	1		1	73
19	景宗	2	6			1			9
20	英祖	5	27	72	10	4		1	119
21	正祖	3	6	18	7	2	2		38
23	純祖		3	27	15		1	2	48
24	憲宗			7	1		1	12	21
25	哲宗			15			1	9	25
26	高宗		1	35	3	2	3	34	78
합계		181	160	199	58	23	24	103	748

전거 : 『燃藜室記述』, 『國朝文科榜目』, 『增補文獻備考』, 『臨軒題叢』, 『東國壯元策』, 『東國壯元集』, 『殿策精粹』, 『震英粹語』

『임현제총』에 수록된 1,347편의 시제를 문체별로 나누어 보면 모두 39종으로 정리된다. 최대 13종으로 설정된 법전에 비하여 그 폭이 훨씬 넓다. 정조는 스스로 여러 문체를 두루 출제하였다고 자부하였는데,⁵³⁾ 출제된 문체의 다양함을 통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정조는 여러 문체를 출제하는 것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였던 것이다.

초계문신의 제술 과목은 1781년에 제정된 『문신강제절목』에 제시되어 있는데, 그 범주가 論, 策, 表, 排律, 序, 記로 설정되어 있다.⁵⁴⁾ 이 중 排律, 序, 記는 과거의 시험 과목에 포함되지 않은 문체이다. 따라서 초계문신의 제술시험 과목은 처음부터 과거의 범주를 벗어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듬해 5월 초계문신과시의 書題望에는 6체 외에 律詩, 頒教文, 上樸文, 批答, 教書 등이 추가된 총 30개의 문체가 등장한다. 論·策·序·記·說·議·辯·題·跋·咨文·奏文·表·箋·啓·詔·制·誥·頒教文·教書·批答·露布·

53) 정조, 『홍재전서』 권182, 「군서표기」 4, 임현제총 “自夫詩賦表箋論策之科體 以至序記辨說 簡銘頌贊碑文判語等一切各體 無不輪回周遍”

54) 『정조실록』 정조 5년 2월 18일(신유) “抄啓文臣講製節目 … 一 試製 以論·策·表·排律·序·記中 自內閣 前期一日 列書論策等題名 受點後 試官入來 具三望書啓 又受點”

檄·上樸文·箴·銘·頌·排律·七律·五律·賦가 그것이다.⁵⁵⁾ 이 중 20종은 과거 시험 과목에 포함되지 않은 문체다. 나아가 咨文, 奏文, 頒教文, 教書, 批答 등은 관료들, 특히 문한관료들이 작성해야 하는 문서의 종류이기도 하다. 초계문신의 제술시험 과목은 과거의 범위를 벗어나 관료로서의 공적인 글쓰기를 지향했다고 하겠다.

실제 초계문신 시험에서 출제된 문체는 35종이다. 이 중 규정 외에 추가적으로 출제된 문체로는 科體詩, 古詩, 律賦, 賛, 歌, 絶句, 詞, 傳, 通文, 回文體, 教書, 致詞, 啓目 등이 있다. 이 문체들은 출제 횟수는 많지 않다. 하지만 이를 통해 정조가 규정에 구애됨이 없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출제 폭을 넓혀간 것을 볼 수 있다.

성균관 시험의 제술 과목은 문과 전시에 준하여 시행하였다. 『속대전』 단계의 문과 전시는 對策·表·箋·箴·頌·制·詔·論·賦·銘 등 9종의 문체 중 하나를 출제하였다. 이에 비해 실제 성균관 시험에서 출제된 문체는 19종이다. 律詩, 排律, 科體詩, 古詩, 上梁文, 律賦, 辨, 賛, 教文, 該, 跋 등 11종이 규정 외로 출제되었다. 비록 초계문신에 비하면 그 범위가 좁기는 하지만 유생들에게도 과문을 벗어난 글쓰기를 요구하였다는 점이 주목되는 바이다.

과문에는 순정문학과는 다른 套式이 있다. 조선의 과문은 당초에는 일반 문장과 유사하였으나 16세기 중반 이후로 투식과 구성방식에서 형식이 강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예를 들어 賦의 경우를 보면 전체 30句를 정식으로 하는데, 각句가 立題-破題-鋪頭-初項-二項-三項-回題-回題下 등으로 형식화된 순서를 따라 배열되었다. 이러한 방식은 당초 시체로 제시된 주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기법으로 개발되었을 것이나 결과적으로는 사회적으로 공유되는 과문의 형식으로 자리 잡았다.⁵⁶⁾ 이 때문에 박지원은 당시의 科文은 고정된 틀로 천만편의 똑같은 글을 짜어내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⁵⁷⁾

55) 『내각일력』 1782년 5월 6일 “今五月朔抄啓文臣課試書題望論·策·序·記·說·議·辯·題·跋·咨文·奏文·表·箋·啓·詔·制·誥·頒教文·教書·批答·露布·檄·上樸文·箴·銘·頌·排律·七律·五律·賦 命韵詔落點”

56) 이상우, 앞의 글.

정조 역시 형식화된 科文의 투식을 통해서는 작자의 소견을 드러내는 제대로 된 글을 지을 수 없으며 표절을 일삼는 부화하고 기괴한 글만 양산할 뿐이라고 누누이 비판하였다. 정조는 당시의 과문이 實學에 방해가 된다고 비판하였고 과문에 實用의 뜻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⁵⁸⁾

1783년 초계문신의 제술 시험에서 尹行任과 徐灝修가 1등을 차운 일이 있었다. 당시의 시제는 詔로 ‘擬漢移新豐’이었다. 이 글의 뜻은 한고조가 上皇을 위하여 新豐을 만들었다는 것으로 上皇에 대한 한고조의 효가 핵심 주제였다. 科次에 입시한 徐命善은 윤행임의 작품을 명작이라고 칭찬하였고, 鄭民始는 윤행임의 작품은 단락단락 題意를 잘 표현하였다고 칭송하였다. 그러나 정조는 윤행임의 작품은 과문투라고 평가하고 오히려 서형수의 작품이 투식에서 벗어난 館閣의 문장이라고 평가하였다.⁵⁹⁾ 정조가 초계문신에게 기대한 것은 과문의 투식을 벗어난 문학관료로서의 글쓰기였던 것이다. 유생들에게 과거에서 출제되지 않는 다양한 문제를 시험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였다.

〈표 4〉『임현제총』 수록 어제의 문체별 · 시험대상별 출제 편수

시험 대상 문체	관료			유생			공통	미상	합계
	초계 문신	공통	기타	성균관	공통	기타			
表箋	128	1	33	112		21	26	42	363
賦	58	1	16	93	2	75	10	40	295
律詩	105		5	2		1		15	128
排律	45	1	6	16			4	27	99
策	22	1	9	30		10	7	1	80

57) 박종채(박희병 옮김), 1998 『나의 아버지 박지원』, 둘째개, 185면.

58) 정조, 『홍재전서』 권61, 『일득록』 1, 直提學臣鄭志儉癸卯錄 ; 정조, 『홍재전서』 권62, 『일득록』 2, 檢校直閣臣尹行憲庚戌錄.

59) 『승정원일기』 정조 7년 5월 4일(감자) “命善曰 尹行任之文 可謂名作矣 上曰 果善作而猶不免於科文圈套 至若脫略繩墨 深得館閣體段 當以徐灝修之作爲優矣 民始曰 新豐之移設 專出慰悅上皇之意 而尹行任之作 則首尾鋪敍 無非此意 徐灝修之作 則一句以外 未見有解題處是可歎也 命善曰 此言誠然矣 上曰 豈有是理 徐灝修則終是館閣之文矣”

銘	16		8	11	1	15		14	65
科體詩	4			5	1	32		10	52
古詩	19	2		10		4		8	43
論	10		12	1		4		9	36
詔	7		4	8		1	1	4	25
義	8					5		7	20
說	13							4	17
上樑文	6	1	1	4				5	17
頌	2		1	3		3		5	14
律賦	6			3			1	2	12
序	6		1					5	12
箴	3		1	3		1		2	10
記	5					1		4	10
辨	6			1				2	9
贊	4			2					6
敎文	3			2					5
歌	5								5
誥	3			1					4
制	2								2
絕句	2								2
詞	2								2
傳	1							1	2
通文	1								1
回文體	1								1
敎書	1								1
跋				1					1
致詞	1								1
議	1								1
判	1								1
奏			1						1
婚書								1	1
啓目	1								1
疑	1								1
書								1	1
합계	499	7	98	308	4	173	49	209	1347

39개의 문체 가운데도 출제 빈도는 차이가 있었다(〈표 4〉, 〈표 5〉 참조).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表箋과 賦로 각각 363편, 295편에 이른다. 다음으로는 律詩 128 편, 排律 99편, 策 80편, 銘 65편 등의 순이다. 그런데, 시험 대상이 누구나에 따라 문체별 출제 비중은 차이가 있었다.

먼저 관료들의 경우를 보면 초계문신(관료공통 포함)은 表箋 129편-律詩 105편-賦 59편-排律 46편 순이다. 표전과 율시의 출제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에 비해 초계문신을 제외한 기타 관료들은 표전 34편-부 17편-논 12편-책 10편 순이다. 특이하게 논의 비율이 높은 것은 정조대 전반 문신제술에서 지속적으로 표전과 논을 출제하였기 때문이다. 관료들의 경우 표전의 출제 비중이 높다는 공통점이 있다.

유생들의 경우 성균관 시험은 표전 112편-부 95편-책 30편-배율 16편 순이다. 초계문신 시험과 비교하면 표전의 비중이 높다는 공통점도 있지만 부의 비중이 높다는 차이도 있다. 지방 유생이 대종을 이루는 기타 유생은 부 77편-과체시 33편-표전 21편-명 16편순으로 다른 문체에 비해 부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과체시의 비중이 높다는 것도 주목된다. 그러나 문과 전시의 경우 부 12편-표전 8편-명 6편-책 5편의 순이며 과체시는 출제된 적이 없다.

과체시는 말 그대로 과거에서 사용하는 시의 형식으로 부와 함께 進士試, 四學의 合製와 陞補試, 지방 公都會의 시험과목이었다. 과체시가 출제된 시험은 수원부 읍내 유생 과시와 1797년 김포 장릉과 화성 현릉원 행차 때 시행한 유생응제다.⁶⁰⁾ 이 시험에서는 진사시 정도의 수준을 요구하였던 셈이다.

이상을 통하여 정조가 의식적으로 시험 대상에 따라 출제하는 문체를 달리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가운데서도 어제 출제의 양대축을 이루는 초계문신시험과 성균관 시험은 각각 표전과 율시, 표전과 부로 대비되어 나타난다. 양자 모두 표전을 중심으로 하면서 초계문신시험은 율시, 성균관시험은 부로 출제 경향을 달

60) 전체 52편 중 수원부에서 출제된 것이 15편, 행행 때 출제된 것이 10편으로 절반 가량을 차지한다.

리하였다라는 점은 주목을 요한다.

표전은 황제에게 진언하는 表와 제후나 국왕에게 진언하는 箋을 통칭하는 말이다. 표전은 대개 역사서에서 뽑은 특정한 상황을 가정하고, 시제에 주어진 작자의 입장에서 賀, 謝, 請, 進, 乞 등의 뜻으로 글을 짓는 것이다. 예를 들면 ‘당나라 군신이 龍虎榜에 대해 하례하다[擬唐群臣賀龍虎榜]’는 당나라 군신의 입장에서 용호방에 대해 하례하는 글을 짓는 것이다. 표전은 기본적으로 역사적 상황의 擬作이기 때문에 시제의 첫머리에 ‘擬’자를 쓴다.

조선의 표전은 주로 駢儻文을 사용하여 짓기 때문에 다른 科體에 비해 특히 어려운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표전을 잘 짓는 유생이 글을 잘하는 유생으로 통했다. 그리고 과거에서는 策과 함께 倍劃이라고 하여 점수를 두배로 계산하였다. 예를 들어 賦 三下는 점수로 환산하면 1分이 되지만 표는 동일한 삼하라도 2분이 된다.

한편 표전은 중국과의 외교문서나 국가의례에 사용되는 실용문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표전은 관료들이 반드시 익혀야 하는 문체이기도 하였다. 특히 문한관료들에게는 표전의 제술 능력이 절대적으로 요구되었다. 이런 점에서 관료의 시험이나 문과에 준하는 성균관 시험에서 표전을 집중적으로 출제한 것은 당연한 일로 보인다.

율시는 근체시의 하나로 4韻 8句의 형식이며 5언과 7언으로 출제되었다. 과체시와 달리 과거에서 출제되는 형식은 아니다. 율시는 거의 대부분이 초계문신의 시험에서 출제되었다. 율시의 비중이 높은 것은 항상 5언과 7언으로 두 편의 시제를 출제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정조는 초계문신제를 도입한 첫 해부터 지속적으로 율시를 출제하였다. 첫해인 1781년 초계문신 시험에서 출제한 어제 22편 가운데 율시가 14편으로 가장 비중이 높다. 율시는 1784년 이후 출제 빈도가 낮아지기는 하지만 정조 집권 기간 내내 꾸준히 출제되었다.

정조는 손수 杜甫와 陸游의 율시 천편을 뽑아 편찬한 『杜陸千選』 서문에서 館閣의 문체가 화려함을 추구한다고 비판하고 三古의 소리를 회복할 것을 주문하였다.

다.⁶¹⁾ 이로 미루어 두보와 육유를 모범으로 하는 율시 출제는 본래의 소박한 문사 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排律, 古詩의 출제 역시 같은 맥락이었을 것이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청대 중국에서도 과문의 형식성을 탈피하기 위하여 배율을 시험 과목에 도입했다는 점이다. 명대 아래 중국 과거에서는 초장의 사서의 와 오경의 등 經義가 당락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 경의의 문장 형식이 八股文이다. 강희제는 이 팔고문의 형식성을 비판하며 1679년(강희 18) 博學鴻詞科에서 瓶賦와 10운 排律을 출제한 바 있다. 그 후 시부의 도입이 계속 논의되다가 1757년(건륭 22) 회시에 이르러 역시 그 형식성이 비판되던 論, 表, 判을 없애고, 사서의와 오경의 편수를 줄이는 대신 5언 8운의 唐律을 도입하였다. 이로부터 배율이 과거의 시험 과목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1782년(건륭 47)에는 배율을 초장의 과목으로 옮겨 경의 중심의 선발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청대 배율의 도입과 초장 배치는 과문의 형식성과 팔고문 중심의 선발을 탈피하기 위한 개혁조치로 평가된다. 이 시의 형식은 ‘試帖詩’로 불린다.⁶²⁾ 이념적으로는 漢學의 부흥과 이에 따른 진한 古文 및 唐詩의 중시가 시첩시 도입의 배경이 된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⁶³⁾

정조가 건륭제의 시첩시 도입을 의식하고 있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또 정조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도 중국과는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과문의 형식성을 비판하고 실용성 문제를 제기하였다는 점에서는 정조나 청대의 강희제, 옹정제, 건륭제나 마찬가지다.

61) 정조, 『홍재전서』 권56, 「題手編杜陸千選卷首」.

62) 楊春俏, 2005, 「清代科場加試試帖詩之始末及原因探析」, 『東方論壇』, 2005년 제5기 ; Benjamin A. Elman, 2000, *A Cultural History of Civil Examinations in Late Imperial Chin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p. 521-558.

63) Benjamin A. Elman, *Ibid.*, pp. 546-558.

〈표 5〉 『임헌제총』 수록 어제의 문체별·연도별 출제 편수

연도 문체	1776	1777	1778	1779	1780	1781	1782	1783	1784	1785	1786	1787	1788	1789	1790	1791	1792	1793	1794	1795	1796	1797	1798	합계		
表箋	10	10	10	7	5	10	15	24	31	22	7	18	17	28	35	19	21	20	18	6	8	15	7	363		
賦	1			1			5	5	3	7	9	11	8	15	19	21	17	34	39	43	14	31	12	295		
律詩					15	18	17	3		7	8	1	9			4	6	7	13	9	10	1	128			
排律	1		3	2		1	4	8	4	10	1	6	2	15	4	7	4	5	10	4	3	4	1	99		
策	5	2	4	1	2	5	3	8	6		2	4	2	4	4	5	11	3	2	2	2	2	1	80		
銘	2		1		5	3	6	4	4	2	2	1	3	3	1	4	3		2	9	8	2	65			
科體詩												3	2	4	1	8	9	7	1	15	2	52				
古詩							1		1	1	1		6	6	3	5	7	3	4	1	2	2	43			
論	3	1	1	1	3	2	3	2	2	3		3	1	4		3		1				3		36		
詔	1		1	1			3	1		4	4		3	2	1	1		1				2		25		
義							1	3			1	2	2	6	1	1		1		1	1	1		20		
說										2		4		3				3		3	2	17				
上樑文						1		1				4		3	2		2	1	1	1	1	1		17		
頌	2		2		1			1	1				1	1		3		1		1			14			
律賦							3	1		3		2		1	1								1	12		
序							1	1			2	2	1	1	2			1			1		1	12		
箴					1		2	2	1		2				1					1			10			
記						1						2	2	2				2		1		1		10		
辨						1				1		3						2		1	1	1		9		
贊						1			1		1							3						6		
敎文						1			1		1			1	1									5		
歌																		4		1	5					
誥					1			1			1			1										4		
制						1							1												2	
絕句																			2						2	
詞																		2							2	
傳													1					1							2	
通文																		1							1	
回文體																		1							1	
敎書																		1							1	
跋																			1						1	
致詞																		1							1	
議																			1						1	
判																		1							1	
奏	1																									1
婚書																		1							1	
啓目																				1						1
疑																			1							1
書																				1						1
합계	23	16	20	15	10	41	52	81	63	55	35	66	37	109	83	83	76	91	91	99	61	100	40	1347		

조선에서는 속종대 표전이 집중적으로 출제되면서 과거제 운영에서 경향간의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표전에 취약한 지방 유생들의 급제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영조는 이 문제를 타개하기 위하여 집권 초기에 篡銘頌, 그 후에는 賦를 일관되게 출제하였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과거의 변별력과 교육적인 효과가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⁶⁴⁾

영조대 徐命膺은 策問은 정치의 득실을 묻고 경륜을 구할 수 있고, 표전은 教命을 짓는데 유용하지만 詩賦는 치도나 응제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진언한 바 있다.⁶⁵⁾ 정조의 인식도 이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정조는 부를 통해서는 제대로 된 인재를 선발할 수 없다고 보았으며, 표전, 배율, 책을 實才를 선발할 수 있는 문체로 지목하였다.⁶⁶⁾ 여기서 실재란 관료, 특히 문한관료로서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한다. 정조는 과문의 실용성을 누누이 강조하였다.

확실히 표전, 배율, 책문은 정조의 집권 기간 내내 꾸준히 출제되었다. 특히 집권 초반에는 책문을 중시하여 즉위 후에 처음 시행한 추도기와 정시문과 전시에서 모두 책제를 출제한 바 있다. 또 책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策題와 對策의 형식에 대해 논하고, 이를 초계문신의 시험에서 책문으로 출제한 일도 있다.⁶⁷⁾ 정조의 책문 개혁 시도도 과문의 형식성을 탈피하고 관료들의 실용성있는 글쓰기를 도모하는 것이었다.⁶⁸⁾ 청대 건륭제 역시 책문을 중시하여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을 하였다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다.⁶⁹⁾

부의 경우 표전, 배율, 책문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정조는

64) 박현순, 앞의 책, 135-138면 및 285-286면.

65) 『영조실록』 권82, 영조 30년 7월 3일(경진).

66) 박현순, 앞의 책, 192-201면.

67) 정조, 『홍재전서』 권161, 「일득록」 1, 直提學臣鄭志儉癸卯錄 및 檢校直提學臣徐有防乙巳錄; 정조, 『홍재전서』 권49, 「策規」.

68) 오수형, 2013 「正祖의 蘇軾 散文 受容 양상 연구」, 『중국문학』 77, 180-182면.

69) 水上雅晴, 2009 「青代科舉における策問-乾嘉期における策問重視の實態」, 『北海道大學文學研究科紀要』.

부 중심의 출제 경향과 부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집권 초반에는 부를 출제하는 경우가 매우 제한적이었다.

초계문신의 시험에서 賦를 출제한 경우는 1783년부터 나타난다. 하지만 초기에는 課講 시험에서 居首를 가리기 위한 比較시험이나 課試의 비교 시험으로 출제가 국한되어 있었다. 1786년부터는 親試에서도 賦를 출제하였지만 이후에도 표전에 비하면 출제 빈도가 현저히 떨어졌다. 다만 1794년 이후에는 표전보다도 부의 출제 빈도가 더 높았다.

성균관 시험도 집권 초기에는 표전과 책을 위주로 출제하였다. 부를 출제한 사례는 1782년부터 확인되지만 역시 표전에 비하면 그 비중이 낮았다. 하지만 1790년에는 20편 중 부를 10편이나 출제하여 초계문신 시험보다 일찍이 부의 비중이 높아진 것을 볼 수 있다. 또 1794년 이후로는 초계문신과 마찬가지로 표전보다 출제 빈도가 높았는데, 특히 1795년에는 33편 가운데 20편이 부제였다.

영조대 이래 부의 출제는 지방 유생들을 배려하기 위한 조처였다. 정조가 부를 출제한 것도 그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정조는 부 위주로 출제한 영조와 달리 표와 부를 함께 출제하는 길을 선택하였다.

친립시나 성균관 시험은 대개 한 문제를 출제하지만 부위주의 출제로 비판반던 영조는 종종 ‘京表鄉賦’라는 방식으로 서울 유생은 표, 지방 유생은 부를 짓게 하였다. 정조는 이 방식을 활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表箋題와 賦를 함께 출제하여 지방 유생들을 배려한 것이다. 다만 영조처럼 ‘경표향부’로 응제자를 특정하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있다고 파악하여 둘 중 하나를 자원하게 하였다.⁷⁰⁾ 부표를 함께 출제한 사례는 1784년에 처음 나타난다.

70) 박현순, 앞의 책, 192-201면.

〈표 6〉 성균관 시험의 表 箋 과 賦 출제 편수

연도	표전		부	
	전체	다제출제	전체	다제출제
1776	3			
1777	4			
1778	5			
1779	3			
1780	2			
1781	4			
1782	4		2	
1783	7		1	1
1784	11	2	2	2
1785	6	3	3	1
1786	1		3	2
1787	7	2	5	2
1788	10	4	4	4
1789	9	3	4	3
1790	8	5	10	9
1791	8	3	5	5
1792	8	2	4	3
1793	9	6	9	5
1794	9	5	11	9
1795	4	3	20	6
1796	4	1	6	2
1797	7	4	8	5
1798	4	3	8	4
합계	137	46	105	63

성균관 시험의 부출제 경향을 보면 전체 105편 중 63편이 정조가 중시한 표·책·배율 등과 함께 출제되었다. 반면 표전 137편 가운데 부 등이 함께 출제된 경우는 46회에 그친다. 정조는 부의 출제를 늘리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표전을 중시하였다.

비단 부·표만 함께 출제한 것은 아니다. 정조는 자신이 중시한 표, 책, 배율과 난이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賦, 篆, 銘, 頌을 구분하여 양쪽에서 하나씩을 출

제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3-4개의 시체를 함께 출제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1795년 8월 29일의 洮儒應製에서는 부, 배율, 상량문, 과체시를 함께 출제하였다. 복수의 시체를 출제하는 것은 응시자들이 자신의 재능과 수준에 맞추어 시체를 선택하여 글을 짓게 하는 방법이었다.

때로는 응시자들을 특정하는 경우도 있었다. 가령 1787년 반유응제 때는 상재생은 賦·表, 하재생은 篆으로 나누어 출제하였으며, 1793년 구일제는 생원·진사는 표, 유학은 부로 나누어 출제하였다.⁷¹⁾ 성균관 하재생인 유학들이 대개 식년시를 준비하는 講經生으로 제술에 취약한 것을 고려한 출제인 것이다.

특히 부가 많이 출제된 해에는 중요한 국가 의례가 있었다는 점도 주목된다. 1790년은 원자 정호를 기념하여 증광시를 시행하였는데, 초시는 8월 16일, 회시는 9월 15일, 전시는 9월 20일에 치렀다. 이를 전후하여 시행된 성균관 시험은 8월 6일 칠일제, 8월 28일 日次儒生講製, 9월 6일 구일제, 9월 8일 추도기, 9월 28일 응제 등 다섯 차례에 이른다. 이 중 일차유생강제를 제외한 네차례의 시험에서 부표가 함께 출제되었다.

1795년은 사도세자와 혜경궁 홍씨가 회갑을 맞이한 해이다. 이 해에는 별시를 시행하였는데, 초시는 8월 28일, 전시는 9월 4일에 치렀다. 이 시험의 초시 응시자는 111,838명에 이르렀다. 이를 전후해서도 8월 29일 구일제와 응제, 9월 8일 반유응제 등 세차례 시험이 실시되었다. 응제는 부, 배율, 상량문, 과체시, 구일제는 부, 9월 8일의 응제는 과체시, 부, 책문이 출제되었다. 세 시험 모두 부가 출제되었는데, 두 번의 응제에서는 과체시도 함께 출제되었다는 것도 주목된다. 난이도가 낮은 문제를 함께 출제하여 더 넓은 층위의 유생들을 시상하도록 준비한 것이다.

정조는 慶科를 시행할 때 지방 유생들의 상경에 맞추어 자주 성균관 시험을 시행하였다. 국가의 경사를 맞아 백성들과 기쁨을 함께 나눈다는 同慶의 의례를 성대히 치르는 한편 경과라는 의례에 참여한 지방 유생들을 위무하고자 한 것이다.⁷²⁾ 부의 출제가 늘어난 것은 이러한 경향과도 관련이 있었다.

71) 『일성록』 1793년 9월 8일.

72) 박현순, 앞의 책, 209-214면.

성균관 시험에서는 표전 중심 출제에서 부·표 동시 출제 혹은 多題 출제로 변화하며 부의 출제가 늘어났다. 이와 같은 양상은 초계문신시험에서 함께 나타난다. 부의 출제가 본격적으로 나타난 1794년 이후 출제된 부제 36편 가운데 16편은 표나 배율 등과 함께 출제된 경우다. 초계문신 시험의 부 출제 증가도 다제 출제의 경향 속에서 등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조가 초계문신시험에서 부 출제를 늘린 것은 지방 유생을 위한 배려와는 무관하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이 沈象奎의 1797년 『일득록』 기록이다. 여기에서 정조는 부가 事理를 서술하고 物情을 묘사하면서 완곡한 풍유법을 구사한다고 평하고 이를 통해 才智의 아름다움을 볼 수도 있고 民物의 情에 이를 수도 있으므로 부가 國政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였다.⁷³⁾ 이전과 달리 부에 대하여 실용적인 의미를 부여하려고 한 것이다. 1794년 이후 표전보다 부의 출제가 많아지는 양상은 정조의 부에 대한 인식 변화와도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3) 정조 어제의 특징

정조의 어제 출제 경향을 파악하는 데 가장 핵심적으로 분석해야 할 것은 어떤 책에서 어떤 주제를 출제했는가 하는 문제일 것이다. 하지만 당시의 응시자들에게도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여기에서는 그 구체적인 분석은 추후의 과제로 미루고 우선 몇 가지 사례들을 통해 정조 어제의 특징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정조는 좋은 시제의 조건으로 “出處가 바르고, 意義가 크며, 氣象이 좋아야 한다”고 지적하였다.⁷⁴⁾ 좋은 글에서 뽑은 뜻이 좋은 구절이 좋은 시제인 셈이다. 구체적인 출제 방법으로는 經史 등의 고전에서 한편의 핵심이 되는 구절을 뽑아 출

73) 정조, 『홍재전서』 권165, 「일득록」 5, 檢校待敎臣沈象奎丁巳錄(1797) “賦者六義之一 而若其敷陳事理 抒寫物情 興比不得竝焉 故賦之於詩 功尤爲多 班固又謂登高能賦 可以爲大夫 非以其詞藻漫衍 寄託深遠而已也 感物言志 謂喻宛轉 足見材智之美 能達民物之情 爲可以與國政也 然則賦也者 豈不誠王道之所當採歟 繼三百五篇而可以述可以刪者 其惟曰賦乎”

74) 정조, 『홍재전서』 권162, 「일득록」 2, 檢校直閣臣李晚秀庚戌錄(1790) “每科試命題 教曰 御題亦王言也 體段自異 試題必須出處正意義大氣象好”

제하되 시체 속에 舉子가 서술해야 할 핵심적인 내용[肯綮]이 내포되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제목을 통하여 그 핵심적인 내용, 곧 주제가 무엇이며, 글을 어떻게 구성할지가 떠오르는 시제가 좋은 시제라고 인식하였다.⁷⁵⁾ 출제의도인 題意가 분명한 글이 좋은 시제인 셈이다. 그러나 제의의 파악 여부는 과문의 우열을 가리는 평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시제에서 제의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지는 않는다. 대신에 핵심어를 제시하여 그 제의를 유추하게 하는 것이다.

정조 스스로 좋은 시제로 자부했던 것은 『漢書』「高帝紀」에서 출제한 ‘意豁如也’이다. 1795년 초계문신 친시에서 표·부·율시의 시제로 출제하였고, 다시 3일 후에 성균관 응제에서 부제로 출제하였다. 두 시험의 우수 시권을 모아 『正始文程』을 간행하기도 하였다.

‘뜻이 활달하다(意豁如也)’라는 구절은 한고조의 인품을 묘사한 ‘寬仁愛人意豁如也’에서 뽑은 것이다.⁷⁶⁾ 정조는 한고조가 넓은 도량을 가진三代 이후의 최고 영웅이며, 이 구절이 한고조의 인품을 적확히 묘사했다고 인식하였다. 또한 이 구절은 가슴을 티끌만큼의 막힘도 없이 트이게 한다고 평가하기도 하였다. 정조는 이 구절이 관련된 고사도 좋고 文字도 좋아 좋은 글제가 된다고 평가하였다.⁷⁷⁾ 곧 정조가 생각하는 좋은 시제는 뜻도 좋고, 표현도 좋은 글인 셈이다.

정조는 책제의 출제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 있다. 대책문은 다른 문체와 달리 장문의 산문으로 작성되는데, 정조대 당시에는 虛頭-中頭-逐條-大抵-設弊-抹弊-篇終으로 그 구성이 형식화되어 있었다.⁷⁸⁾ 정조는 책문을 출제할 때 이

75) 정조, 『홍재전서』 권182, 「군서표기」 4, 臨軒題叢 “昔人有謂賦題非難 命題爲難 盖雜抽於經史百家之中 而必拈其一篇精英所萃之句 使作者之排鋪肯綮 預爲藏伏于題目數字之內 然後始可謂善於命題 此其所以難也 … 每一命題 屢回審繹 必思應製者之意匠鋪叙 然後始頒之”

76) 張維는 뽑은 글로도 뜻을 다한 좋은 사례로 이 구절을 꼽기도 하였다. 장유, 『谿谷集』『谿谷漫筆』 2, 「漢書稱述高祖詞約意達」 “古人識高 筆力簡嚴 詞約而意盡 如漢書稱述高祖 始曰寬仁愛人意豁如也 常有大度 終曰不修文學而性明達好謀能聽 此僅數語耳 形容高祖爲人無以復加 使後之文人爲之 不知更費幾何語也 盖唯其識高 故能有此筆力也”

77) 정조, 『홍재전서』 권165, 「일득록」 4, 原任直提學臣李晚秀丙辰錄(1796) “御題多出於漢書高帝紀 篡臣或以言 教曰 漢高之恢廓大度 啓四百年基業 卽三代後初出英雄 非唐宋中主所可擬議 卽其規模氣象之所範圍 事蹟好 文字亦好 如意豁如也四字 令人胸無芥滯 豈不是好題”

러한 구성을 염두에 두고 질문을 나열하기 때문에 대책문이 책문의 질문을 부연 설명하는 방식으로 채워져 실용성이 없다고 인식하였다. 이에 정조는 고질적인 형식을 타파하고 ‘급선무’를 출제하도록 명하였다.⁷⁹⁾

실제 정조가 출제한 책문은 經史策와 時務策을 막론하고 정조의 현실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과거에서의 講經 실시와 책문작성법을 다룬 ‘講經’과 ‘策規’, 西學의 확산과 소품체의 유행에 경종을 울리고자 한 ‘文體’, ‘俗學’, ‘八大家’, ‘僞書’와 같은 책제들은 정조의 현실 인식이 강하게 드러나는 시제이다. 정조는 이를바 ‘문체반정’을 일으킨 1792년에는 한해동안 성균관시험에서만 9편의 책제를 출제하였다.

정조가 제시한 책제의 출제법은 대책문의 속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원칙적인 내용에 가깝다. 하지만 당시 책문이나 대책문이 모두 형식화되어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대책문의 본래적 속성을 회복하려 하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아울러 식년시·증광시의 초시와 회시 외에는 책제가 거의 출제되지 않던 상황에서 책제를 적극적으로 출제하려고 하였다는 것도 주목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정조 스스로도 형식에 얹매힌 科策은 실효성을 없다고 평가하였다. 책문을 내기는 하였으나 거기에 대해 특별히 대안이 제시되리라는 기대는 없었다는 것이다. 특히 政務의 경험이 없는 유생들에게 국가가 제시해야 할 대책을 제시하라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정조의 학술과 문예에 초점을 맞춘 책문은 다른 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딱히 유생들의 대책을 기대하지는 않지만 책문이라는 형식을 통하여 해당 문제에 대한 자신의 소회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조의 책문은 대책을 구하는 時務策이라기보다 당시의 학술과 문예에 대해 유생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라는 점에서 보다 중요한 의의가 있었다.

책제를 제외한 여타의 시제는 대개 고전에서 특정한 문구를 뽑아 출제한다. 이 상욱의 연구에 따르면 16세기 중반 이후의 과시나 과부는 주로 송대 인물과 관련된 사건 또는 詩文을 하한선으로 하며, 후대로 올수록 보다 구체적인 상황을 진술

78) 조선후기 대책문의 형식에 대해서는 이상욱, 앞의 글, 172-178면 참조.

79) 정조, 『홍재전서』 권161, 「일득록」 1, 直提學臣鄭志儉癸卯錄.

하여 시제의 글자수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⁸⁰⁾ 또 황위주의 연구에 따르면 18세기 과부는 삼대에서 송대까지의 道統과 관련된 유학자, 국가의 흥망과 관련된 군왕과 신료, 그 외 忠節, 賢臣, 勇將 등과 관련된 내용이 주로 출제되었다.⁸¹⁾ 과거에서 추구하는 글쓰기의 주제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이다.

정조의 어제도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출제의도가 드러나는 사례들을 보면 눈에 띄는 점도 있다.

우선 고전에서 출제를 하는 경우에도 어떤 구절을 뽑을 것인가 하는 것은 당시의 정황과 관련이 된다. 가령 1797년 상재생응제에 출제한 賦題 ‘且教人靜坐’은 『근사록』에서 뽑은 구절로 유생들에게 ‘학문의 지름길’을 깨우치기 위해 출제한 어제다.⁸²⁾ 이런 시제는 교육적인 의도로 출제한 것이다. 또 1796년 성균관 응제의 賦題였던 ‘年年宴杖鄉’은 唐太宗의 「千秋節宴詩」의 구절을 취한 것이다. ‘杖鄉’이라는 구절은 『禮記』「王制」의 ‘六十杖于鄉’에서 뜻을 취한 것으로 60세를 의미한다. 이 시제에는 동갑이던 사도세자와 혜경궁 홍씨의 회갑을 기념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⁸³⁾

고전에서 출제한 시제는 그 전거만을 놓고 보면 중국의 사례가 근거가 된다. 하지만 그 문제를 출제한 의도를 따져 보면 시의성이 개입되어 있다. 즉, 당시의 특정한 정황이 그 시제를 출제하게 된 배경이 된 것이다. 이러한 것은 비단 정조대만의 특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시제를 분석할 때는 어떤 정황을 반영하는가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두 사람의 연구에서는 과부, 과시의 전거가 宋代 이전의 사례가 주를 이루며 조선의 사건이나 인물을 전거로 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정조의 어제에는 정조 당대의 사례가 전거가 된 경우도 다수 등장한다. 예를 들어 1786년 문과 전시의 부제인 ‘壯元峯’이나 1787년 유생 응제의 부제 ‘敬奉閣’, 1789년 유생응제의 부제 ‘萬東廟’, 1792년 수원읍내유생 응제의 부제 ‘靈壽閣’, 1798년

80) 이상육, 앞의 글, 197-200면.

81) 황위주, 앞의 글(2014), 17-28면.

82) 정조, 『홍재전서』 권164, 「일득록」 4, 提學臣鄭民始丁巳錄.

83) 정조, 『홍재전서』 권164, 「일득록」 4, 檢校待敎臣沈象奎丙辰錄.

식년문과 전시와 춘도기의 銘題인 ‘蕩蕩平平室’ 등이 그 사례이다. 1795년 화성을 방문했던 해의 삼일제 시제는 수원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고개인 ‘遲遲臺’였는데, 부, 명, 20운 고시, 율부의 공통 제목으로 출제하였다. 하지만 이런 사례들은 아주 많지는 않다. 부의 출제방식은 고전에서 글귀를 취하는 전통적인 방식이 선호되었다.

다만 표전에 제시된 시기와 관련해서는 주목을 끄는 점이 있다. 이상육의 연구에 따르면 과표는 역대 군신간에 벌어졌던 특정한 상황으로 출제되며 주로 한·당·송의 문제가 출제되었다.⁸⁴⁾ 그런데, 정조가 출제한 표전의 시기는 ‘本朝’로 지칭된 조선이 110편, 당 60편, 송 47편, 한 44편, 周 28편 순이다.

고전에서 출제하는 경우 한·당·송을 위주로 출제한 것은 이상육의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다. 그러나 정조의 어제에서는 ‘본조’로 지칭한 조선의 篆文, 곧 조선의 신료가 국왕에게 올리는 전문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관료와 유생으로 나누어 보면 관료는 184편 중에 70편, 유생은 150편 중에 34편이다. 관료의 경우가 월등히 비율이 높기는 하지만 유생들의 경우에도 가장 빈도가 높기는 마찬가지다.

정약용의 습작 및 과작 표전을 모은 『科表私集』(奎 7581)에는 전체 428편이 수록되어 있는데, 송 112편, 당 107편, 한 83편, 주 28편, 조선 24편으로 송대의 습작이나 과작이 가장 많다. 또 『경외제록』이나 『과제각체』에 나타난 표제를 보면 조선의 일을 주제로 삼은 경우는 보이지 않는다. 적어도 시관의 시제에서는 조선의 일을 출제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던 듯하다.

『연려실기술』「登科總目」에 수록된 문과 전시의 시제 가운데 표전의 출제경향을 보면 조선초기부터 조선의 일을 전거로 삼은 시제들이 보인다. 예를 들어 1429년(세종 11) “본조 찬성 권근이 칠월편도를 바치다[本朝贊成權近進七月篇圖]”와 같은 전문이 그것이다.⁸⁵⁾ 그런데, 선조대 이후 표전의 출제가 크게 늘어난 이후에는 오히려 조선 내부의 일을 다룬 전제가 매우 드물게 확인된다. 선조대 출제된 표전제는 25편인데 이 중 조선의 일을 다룬 것은 1574년의 ‘고려가 여진과 통하지

84) 이상육, 앞의 글, 197-200면.

85) 이병혁, 앞의 글 참조.

말기를 청하다[高麗請勿通女眞]’와 1594년의 ‘조선이 教師 몇 사람을 남겨 軍民을 훈련시킬 것을 청하다[朝鮮請留教師數人訓鍊軍民]’는 표제가 있을 뿐이다.

가장 표전이 많이 출제되었던 숙종대에도 25편 중에 조선의 일에 관계된 것은 1691년 ‘본조 유생들이 승지를 시켜 備忘記를 내리고 낭독하여 특별히 깨우친 것에 사례하다[本朝儒生等謝令承旨宣讀備忘記特加戒喻]’와 ‘본조에서 강토를 개척하여 6진을 설치한 것을 하례하다[本朝賀開拓疆土設置六鎮]’ 2편뿐이다. 확실히 이즈음에는 조선 국내용의 전문을 출제한 사례는 매우 드물다.

이에 비해 영조대에는 27편 중 8편, 정조대에는 6편 중 3편이 국내용의 전문이다. 아무래도 문과 전시의 표전에서 조선 국내를 전거로 삼는 경우는 영조대 어제의 출제와 함께 대두된 경향으로 보인다. 영조는 御題라도 본조의 일은 거론하지 않는다고 언급하고, 조선의 일로 執策을 출제한 試官을 추고한 바 있다.⁸⁶⁾ 하지만 어제를 자주 출제하면서 그 금기는 허물어져 간 것으로 보인다. 성균관 시험에서 그 사례가 더 풍부하게 확인된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임헌재총』의 사례를 보면 순조대의 경우도 비교적 조선의 일이 많이 출제된 것을 볼 수 있다. 周 22편, 한 10편, 송 10편, ‘본조’ 7편, ‘조선국’ 6편으로 조선의 일이 13편에 해당된다. 周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셈이다.

다만 정조대와 차이도 있다. 표전의 시제에서 ‘本朝’로 지칭된 것은 조선국왕에게 바치는 전문이며, ‘조선국’으로 지칭된 것은 중국의 황제에게 바치는 표문이다. 순조대의 경우 전문과 표문이 반반씩 출제된 셈이다. 그러나 정조대에는 ‘조선국’을 지칭한 경우는 更文製述에서 출제된 두 건뿐이다. 나머지는 모두 국내용의 전문인 것이다.

정조가 출제한 전제는 조선의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출제 당시에 있었던 일을 소재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예를 들어 1789년 4월 12일 문신제술의 築題 ‘본조 교서관이 가체신금사목을 올리다[本朝校書館進加鼈申禁事目]’는 전해인

86) 『승정원일기』 영조 39년 9월 8일(임술) “上曰 雖御題 不舉本朝事 其草與落幅 恐或不潔而然也 今番二所策題 以本朝事 執策以問 旣無禁令 雖非異事 極行書者多 其涉不審 當該試官推考”

1788년 10월에 『加飭申禁事目』을 간행한 사실에서 출제한 것이다. 또 1784년 6월 17일 일차전강비교의 전제인 “본조의 태학 상재생 등이 일차전강을 하는 날에 사관을 보내 ‘너희들은 경서 공부가 익숙하지 않은데 더운 날씨에 강경에 응하는 것은 부질없고 실효도 없다. 그래서 강경을 면제하고 御題를 내려 齋舍에서 지어 바칠 것을 명한다’고 유시한 것에 사례하다[擬本朝太學上齋生等謝於日次殿講之日遣史官諭以爾等不嫻經工庚熱赴講徒勞而無實效故命除講仍宣御題各於齋舍製呈]”는 당일에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유생들에게 전문을 짓게 한 것이다. 정조가 추구한 표전의 글쓰기는 실제의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실용문의 글쓰기였던 것이다.

표전의 사례를 보면 정조가 출제한 어제는 확실히 시관들이 출제한 시제에 비하여 소재가 넓고 시의성이 강하다. 자칫 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 시관과 달리 적어도 출제 자체에서는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 국왕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다. 그러나 정조가 누누이 과문의 실용성과 시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시의성 지닌 어제의 출제는 과문의 실용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여겨진다. 정조는 좋은 글을 짓게 하기 위해서는 좋은 시제를 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실용적인 글쓰기를 위해서는 시제 자체가 실용적인 주제를 담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이 정조가 가장 중시하였던 표전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4. 맷음말

정조는 재위기간 동안 1,347편, 연평균 58.6편의 어제를 출제하였다. 집권 초반에는 20편 이하이던 어제는 초계문신제가 도입된 1781년 이후 40-50편으로 늘어났고, 1789년 이후에는 매년 80-90편 이상의 어제를 출제하였다. 어제의 편수가 시험 횟수와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제를 출제하는 것이 정조의 중요한 일상 업무 중의 하나였음에는 틀림이 없다.

정조가 『임현제총』을 편찬한 것도 일상적으로 어제를 출제해야 하는 업무와 관

련된 것이다. 『임현제총』은 어제를 출제할 때 기출문제의 출제를 피하기 위해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나아가 어제가 다른 시험에서 중복 출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참고자료이기도 하였다.

정조는 당대의 學風과 文風을 강하게 비판하며 쇄신을 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활용한 핵심적인 방안이 초계문신제와 성균관시험이다. 정조는 초계문신과 성균관 유생들에게 강경과 제술 중 하나를 전문분야로 선택하게 하고 지속적으로 시험을 통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어제를 출제하는 제술시험은 국왕이 요구하는 글쓰기의 방법을 익히는 과정이었다. 정조의 출제 경향은 정조가 요구하는 글쓰기의 내용과 형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정조는 관료와 유생들에게 과문체를 벗어난 실용적인 글쓰기를 요구하였다. 이를 위해 과문체를 벗어난 다양한 문체를 출제하였고, 표전, 책문, 율시·배율을 통해 그 실용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정조의 어제는 실용적인 문장을 구성하도록 교육하는 교육의 소재이자 주제였다. 정조의 어제 출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문체로 드러나는 시험의 내용이나 시험 대상이 확대되었다. 후반으로 갈수록 초계문신이나 성균관을 벗어나 지방 유생이나 특정, 불특정의 다수를 위한 임시적인 시험이 자주 시행되었다. 정조의 어제를 통한 교육이 내용면에서나 대상면에서 더욱 확대되고 있었던 것이다.

문화급제를 위해 성균관과 그 주변의 班村에 머물고 있는 유생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불시에 시행되는 성균관 시험은 서울에 머무는 유생만이 누릴 수 있는 부가적인 급제의 기회였다. 게다가 해를 걸러 치러지는 문과와 달리 일년에도 십여차례씩 기회가 있었다. 정조대 문과 급제자 777명 중 273명, 즉 35%는 문과 아니라 성균관 시험과 각종 응제에서 합격한 直赴殿試者였다. 유생들에게는 문과보다 성균관 시험에 대비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었다. 정조의 어제는 그들에게 무엇을 공부할지를 제시하는 지침이었다.

논문투고일(2016. 4. 30), 심사일(2016. 5. 27), 게재확정일(2016. 6. 10)

참고문헌

- 『臨軒題叢』(국립중앙도서관 소장, 古朝25)
 『京外題錄』(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奎9943)
 『臨軒功令』(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奎11437)
 『常目總覽』(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奎7914)
 『監市贍錄』(한국국학진흥원 소장)
 『승정원일기』
 『일성록』
 『내각일력』
 정조, 『弘齋全書』
 박종채(박희병 옮김), 1998 『나의 아버지 박지원』, 돌베개

 강혜선, 2010 「정조의 문체 비판 재론」, 『한국문화』 49
 김성진, 1993 「정조년간 과문의 문체 변화와 문체반정」, 『한국한문학연구』 16
 박현순, 2014 『조선후기의 과거(科舉)』, 소명출판
 오수형, 2013 「正祖의 蘇軾 散文 受容 양상 연구」, 『중국문학』 77
 원창애, 2012 「조선시대 文科 直赴制 운영 실태와 그 의미」, 『조선시대사학보』 63
 李炳赫, 1986 「韓國科文研究-詩·賦를 중심으로」, 『東洋學』 16
 이상우, 2015 「조선 과문(科文)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정옥자, 1981 「奎章閣抄啓文臣研究」, 『규장각』 4
 최광만, 2015 「영조대의 성균관 과시 정책」, 『한국교육사학』 37-3
 _____, 2015 「정조대의 성균관 과시 정책」, 『한국교육사학』 37-4
 허홍식, 2005 『고려의 과거제도』, 일조각
 황위주, 2013 「科舉試驗 研究의 現況과 課題」, 『대동한문학』 38
 _____, 2014 「離騷遺香」을 통해 본 조선후기 '科賦'의 출제와 답안 양상», 『대동한문학』 40

 和田正廣, 1993 「明代科舉制度の科目の特色--判語の導入をめぐって」『法制史研究』, 43
 Benjamin A. Elman, 2000 *A Cultural History of Civil Examinations in Late Imperial Chin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楊春俏, 2005 「清代科場加試試帖詩之始末及原因探析」, 『東方論壇』, 2005년 제5기
 水上雅晴, 2009 「清代科舉における策問-乾嘉期における策問重視の實態」, 『北海道大學文學研究科紀要』

Abstract

King Jeongjo's Publication of *Imheonjechong* and Examination Questions

Park, Hyun Soon

King Jeongjo published various books related to civil service examination during his reign. Among them, *Imheonjechong* was a book that involved exam questions set by the king himself for civil service exams, literary exams for scholars affiliated with the royal library, Kyujanggak, and Confucian academy, Sōnggyungwan, exams. Therefore, this book will show the tendency of exam questions by Jeongjo.

King Jeongjo believed that fine exam subjects should be set first in order to have candidates submit fine writings. Exam questions in *Imheonjechong* include contents of study and styles of writing required for the officials and scholars by Jeongjo who particularly emphasized the role of a scholar-king.

This study is a basic research on *Imheonjechong*. It will first examine the purpose of the book's publication and its usage, and then move on to analyze the tendency of exam questions set by king Jeongjo. Through this study, we can understand that king Jeongjo aimed for practical writings apart from writings particular to civil service examinations.

Key words : *Imheonjechong*, Examination Questions, Scholars affiliated with the royal library, Sōnggyungwan, Civil service examination